

#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(대안)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0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제안경위

- 서울특별시장이 2020년 10월 16일에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2020년 12월 17일 제298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승계통합으로 불필요해진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·정비하고자 함.

## 2. 제안이유

- 재정투융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승계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금의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